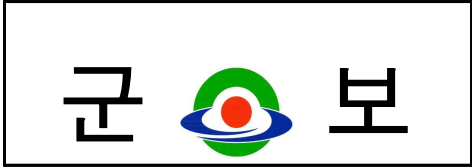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68호 2024. 11. 4.(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535호)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맑은물사업소공고 제2024-4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 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안 제18조)
 - 임의변제청구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xuanzhen1124@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안 제18조)
 - 임의변제청구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11월 중 실시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의 변제) ① (생략)	제18조(임의 변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인감증명서</u>	<u><삭제></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2. 판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현행화 (안 제2조)

- 기업출납원 : 환경관리과장 → 맑은물사업소장
- 수입원 : 수입업무 담당자 → 수입업무 팀장
-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자 → 지출업무 팀장
-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자 → 자산업무 팀장
-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자 → 자산업무 팀장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안 제51조)

- 채권자 영수인 날인 시 청구자와 영수자가 다른 경우 인감
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변경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맑은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ldbfl0605@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

3) 팩스 : 054-650-6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전화 : 054-650-63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담당자”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